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

# 마포구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 회의록

---

2024. 2.

# 마포구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 회의록

## <회의개요>

- 일 시: 2024. 2. 23.(금) 14:00
- 장 소: 마포구청 12층 중강당
- 주재자 및 발표자: 5명
  - 주재자: 김성우
  - 발표자: 강희향, 김대희, 박성식, 박영희

## □ 새마포기획팀장

- 잠시 후 공청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휴대전화는 종료해주시거나 무음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청회의 사회를 맡은 새마포기획팀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결정 관련 주민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오늘 공청회 진행순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리플릿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는 주재자 및 발표자 소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결정에 관한 사전 설명, 발표자 찬반 의견발표 및 토론, 방청인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행정절차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공청회 주재자는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공청회 주재자 및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공청회를 주재해 주실, ○○○ 마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발표자분들을 성명 가나다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어린이집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 서강동 주민자치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 합정동 주민자치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방청객들 박수)

- 네. 감사합니다. 덧붙여 입구에서 배부 받으신 의견서에 오늘 참석해주신 주민 여러분의 의정 활동비 지급기준 결정과 관련한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합리적이고 공감되는 의정 활동비 결정을 위하여 의견서를 작성해 주시고 공청회 종료 후 나가시면서 담당 직원에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그럼 이후부터는 ○○○ 마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주재자

- 네. 안녕하십니까? 마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마포구민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마포구의회의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한 공청회입니다.
- 먼저 의정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이 받는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며, 지방의원 선거가 있던 해인 2022년에 이미 4년간의 월정수당이 결정되었습니다.
- 오늘 공청회는 의정활동비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의정활동비란 의정자료 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존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월 110만원 이내'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 2003년 이후로 해당 규정에 변함이 없어 전국의 모든 기초 의회는 동일하게 월 110만원을 받고 있었는데, 작년 12월, 20년 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의정활동비 상한액이 '월 150만원 이내'로 상향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지난 2월 1일 1차 회의를 개최하였고,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안)을 월 150만원으로, 의견수렴 절차는 공청회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안) 결정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20년간의 물가상승률 56.2% 대비 동결된 의정활동비의 현실화를 통해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개정 취지를 감안하였습니다.
- 그리고 마포구의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자치구 중 9위이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친 의정비는 서울시 자치구 25개구 중 22위인 점, 다른 자치구 또한 150만원으로 인상하게 될 경우 의정비는 재정자립도에 비해 여전히 하위권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급기준(안)은 150만원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마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안)과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하여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급기준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결정된 금액이 공표되고, 의회에 통보 되어 의회에서 해당 금액 이내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 오늘 공청회는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해 마포구민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자리인 만큼 내실 있고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 그러면 발표자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님부터 시작하여 다음은 ○○○님, 이렇게 양측 입장을 번갈아 가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표자 ○○○

-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입니다. 저는 의정활동비 상한액 상향에 따른 찬성 의견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당초 의정비를 책정했던 시기에 몇 가지 기준을 두고 110만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원 1인당 주민 수, 주민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 재정자립도 같은 기준이고요. 그래서 가장 직관적인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중에서 마포구의 재정자립도는 9위로, 상위 36%에 포함되고, 최근 추세를 봐도 2019년 대비 매년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활동 지급 능력인 기준 재정수요만 보더라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능력, 그리고 처리하는 각종 민원, 안건의 수가 절대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4대 의회, 2002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마포구의의회에서 처리한 안건이 111건, 최근 직전 8대 의회, 2018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처리한 안건이 627건, 약 5배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처음 의정활동비를 110만원으로 결정한 시기인 2008년 포함되어 있는 5대 의회에 비해서도 4배 이상의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 현재 9대 의회에서는 전체 4년 동안 700건 이상의 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거와 비교해서 절대적, 상대적으로 구의원의 의정활동 중 하나인 조례발의를 포함한 처리 안건 수가 매우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처리 안건이나 각종 구민으로부터의 민원, 그리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의원의 역할과 의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구민의 기대도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여전히 의정활동비 110만원은 20년 전과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만 보더라도, 20년 동안 56.2% 정도 증가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전혀 반영 없이 의정활동비는

당초 지급액과 동일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의정활동비를 상향한다고 하더라도, 36% 정도 상향하는 것이라 20년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겸직을 두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살펴보면 겸직이 가능한 구조이기는 하지만, 마포구의회를 보더라도 겸직을 통한 실제 소득이 있는 의원의 비율이 10%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주 소득원이 의원 활동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구의원이 처음 활동하던 시기에는 소득원은 외부에 있고, 봉사직과 명예직으로만 생각되었던 것과 다르게, 요즘에 와서는 활동의 범위도 넓고 구민들도 전문성을 기대하고 또 의정활동의 이슈도 다양해져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의정활동비가 상향이 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의견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점차 민원 건수나 구민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증가함에 따라서 다른 일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한다면, 구민들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럴 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금 많은 자치구들이 관련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 수렴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평구나 용산구는 150만원까지 상향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하고요. 다른 자치구들도 의정활동비를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도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참고하여서 의정활동비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 활동비 상향에 따라 마포구의회 의원님들도 구민들이 기대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찬성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객들 박수)

## □ 주재자

-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마포구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이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능력이 상당히 증가가 되었는데 의정활동비는 계속해서 동결되었다는 점, 실제 겸직으로 소득을 얻는 의원들은 10%도 안 된다는 점을 이유로 의정활동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 다음은 ○○○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표자 ○○○

-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에서 머리 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입니다. 저는 반대편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발표한 후에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저를 나쁘게 봐서 마포구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지만 좀 몇 마디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방의회가 시작돼서 상당한 기간이 흘렀는데요. 1991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이제 원론적으로 돌이켜보면 1991년 지방자치제가 출발

할 때는 명예직이었습니다. 보수가 없었죠. 보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2006년도에 유급제로 이제 바뀌었죠. 그러다가 이제 2024년 현 시점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구 의원님들의 의정비를 보게 되니까 우리 마포구 의원님들을 보니까 월정 수당이 한 연봉 한 3400 정도 그다음에 의정활동비가 월 110만원 받게 되니까 한 달에 1320만원, 합치면 한 4,600만 원 정도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상 많지 않은 겁니다. 우리나라 중위 소득을 놓고 보니까 4인 기준을 우리가 놓고 볼 때 우리나라 중위 금액이 월 563만원, 연 6,300만원 정도가 우리 중위 소득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 의원님들은 이거보다 못 받고 계신 거예요.

- 그런데 저 같으면 이거밖에 안 받냐 하고 구의원을 안 하겠어요. 근데 뭔가 이 금액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마 우리 마포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또 우리 국가를 좀 더 잘 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마 이 의정 활동을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왜 구의원들은 본인들이 월급을 올리면 되지 왜 이렇게 마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이런 의결을 거치고 또 공청회를 거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급여를 결정하는 어떤 부분이 있지만 우리 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이걸 공청회에서 조절을 해서 인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진 거예요. 25개의 자치구 중에 지금 다 지금 40만원씩 다 올렸습니다. 그럼 사실상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죠.
- 그런데 우리 마포구 살림살이 나아졌습니까? 코로나를 거치면서 자영업자, 회사라든지 근로 소득자들은 직장을 잃고 40만원 인상이 아닌 40만 원 빚에 허덕이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이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왜 이 시기에, 왜 이 시기에 이 의정비를 올리는 이런 부분이 됐나 또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 문제는 국회의원이라고요. 국회의원들은 연간 세비를 지난해보다 1.7% 오른, 우리 구 의원님들보다 1억을 더 받습니다. 1억 5,700만 원.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급여를 올릴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거죠. 그런데 우리 구의원님들 안 올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선거가 있겠지만 tv를 끄고 삽니다. 답답하니까. 이렇게 일을 못해도 세비는 1억5,700만원을, 또 1.7% 올려서 받는구나. 저는 우리 구 의원님들을 1억 5,700만 원을 줘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을 아예 무보수 명예직으로 가야 되고요.

(방청객들 박수)

-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반대 측의 입장에서 갑자기 우리 구의원의 의정활동비를 1억 5,700만원 주자라고 한다면 아마 관계자분들이 당황스러워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린 이유는 어느 순간에는 저는 국회의원보다 더 살가운 우리 구의원님들의 급여가, 줘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이 있다면 1억 이상 줘야 된다고

하지만 시기적으로 볼 때 25개의 자치구가 다 110만원에서 150만원. 그럼 40만원 곱하기 12개월이면 580만원이에요. 580만원 별로 올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갖고 이렇게 공청회를 한다 그러면 저는 지금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대부분의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우리 국가의 GDP가 3만불 이상 된다고 하는, 국가의 삶의 질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는 이렇게 항상 배가 고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좀 배가 부르십니까? 아주 죽겠어요. 강의도 줄어들고 학생 수는 줄어들어서 폐과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통 분담할 사람이 없어요.

-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번 의정비 인상을, 좀 스스로 다른 24개 자치구들이 40만원씩 올린 것에 비해서 우리는 올리지 않겠다라는 이런 멋진 모습,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정말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곳은 40을 올렸지만 우리는 이 정도로 구민들과 고통 분담을 하겠다라는 그런 모습, 즉 이런 말씀을 한번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 물론 40만원 올린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그냥 1년에 480만원을 더 받는 겁니다. 그런데 좀 더 시기를 두고 올리는 그런 공청회에 다음에 제가 참석할 것을 기대하면서 저의 말씀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방청객들 박수)

## □ 주재자

- 네. ○○○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최대 인상보다는 우리 마포구민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낮은 수당으로 인상하는 그런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 □ 발표자 ○○○

- 안녕하세요. 서강동 주민 ○○○입니다. 저도 앉아서 얘기해도 되겠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패널로 앉으리라는 생각은 안 했더랬어요. 그런데 요즘 세상을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10대국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말로 우리가 경제 10대국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굉장한, 진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우리나라입니다.
-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보면 아까 그 발표자분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 우리를 대변해서 일을 해주는 분들이 그 구의회 의원들입니다. 그분들이 일을 열심히 잘하고 또 우리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우리의 얘기를, 뜻을 모르고 그저 구의회에 가서 거수기나 되고 이렇게 앉아 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의 뜻을, 그분들은 잘 알아서 그것을 정리해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돼야 돼요. 지금은 초창기, 아까 말씀도 있으셨지만 1999

년도에 그저 봉사활동으로 하는 그런 의회가 아닙니다. 이제는 2006년도부터 유보수로 이렇게 구의원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뽑은 의원님들 그분들이 그저 남이 하는 얘기, 또 뭐 여기 구청에서 오셔가지고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은 그분들이 하자는 대로 그렇게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주민들의 뜻을 우리 마포 구민들의 뜻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구민들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오늘은 의정활동비 여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20여 년 간 의정활동비를 올리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의정활동비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안 올렸으면 저도 좋겠어요. 여러분들 요즘 굉장히 힘드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무척 힘들어요. 그, 친구들하고 소주 한 잔 먹으려도 3만원, 4만원 들어가는 게 아까워서 다섯 번 만나던 걸 두 번, 세 번으로 이렇게 줄이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가 이 구의회 의정활동비는 그분들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느냐, 노력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의정 자료 연구비, 보조활동비 뭐 이런 것들인데 요즘에 보면 저는 어저께도 구의원하고 민원이 있어서 같이 가봤어요. 저하고도 연관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갔더니 이게 사실 도로가 사유지인데 거기에 어떤 분이 여기는 차가 들어가지 말라고 방어 말뚝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구청에다가 민원을 넣고, 경찰서에다가도 민원을 넣고, 이렇게 했는데 구청이나 경찰서에서 사유지이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이것을 해결할 거냐, 이게 바로 의원님들이 활동에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것을 잘 정리해서 구청이나 경찰서에 발의를 해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진짜 어떤 문화적인 면이라든가 경제적인 면 이런 것들이 발전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일이 그 전같이 단순하지가 않고 요즘은 다양화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례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렇게 의정 활동할 적에 그분들이 어쨌든 다니다가 점심도 먹어야 되고 또 그분들 만나서 얘기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겠죠. 이게 세계 경제 10대국이라는 나라에서 사실, 돈 인상을 안 시켜주고 의정활동비를 인상 안 시켜준다고 그러면 참 좋겠죠, 지금 현재 우리들 마음은.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질은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향상을 위해서라면 그분들이 정말로 그 격에 맞는 의정활동비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먼저 마포구 예산을 한번 들어볼까요? 2003년도에는 1700억 대였어요. 근데 2024년도 8,400억입니다. 저 구청에서 오신 분들 맞습니까 이게? 예, 이게 제가 잘 알아보고 한 건데 구청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네요. 1700억 대에서 8,400억 대, 이게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는 20년 전 그대로 있다는 건, 그거는 좀 뭔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일꾼들, 의원들이 우리들의 일꾼이지 않습니까? 그 일꾼들이 일을 잘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분들에게 걸맞는 그러한 의정활동비도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뛰는 말에는 채찍질 하라고, 우리가 구의원들 가지고 너 뭐 했냐 뭐 했냐 따지는 거 요즘에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 참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의정활동비 인상을, 인상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면서, 우리가 더 우리 삶의 질을, 또 문화적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청객들 박수)

## □ 주재자

- ○○○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방 행정 환경이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현실에 맞춰 의정 활동비도 현실화돼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 발표자 ○○○

- 안녕하세요. 합정동 주민자치위원장 ○○○입니다. 저는 발표를 하기 전에 지금 오신 방청석에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좀 한 다음에 제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의정 활동비라는 게 의정 자료 수집·연구비로 월 90만 원이고요. 그리고 보조활동비라고 해서 20만 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110만 원이고요. 그리고 월정 수당으로 해서 260만 원 정도가 나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포구가 22위예요, 25개 구 중에서. 금액 차이를 연간으로 치면, 강남 같은 경우가 5,300이고요. 마포구가 4,500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직장을 다니면 저희는 월급이라고 받잖아요, 급여를. 그런데 여기는 월정 수당이라고 받아요. 급여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퇴직금을 못 받아요. 저희는 4년 하면 퇴직금이 꽤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건, 저는 반대로 나왔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들으실 때 이런 내용이라고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40만 원 올리자는 것도 이게 법령이 제정이 돼서 지금 40만 원이 올려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40만 원을 올릴 거냐 말 거냐도 있지만, 이제 반대에서는 안 올렸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건 제가 발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내용은 이 정도로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해서 그때부터는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됐어요. 근데 이 배경에는 의원직에 몰입하셔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거든요. 이후에 지방 의원에게 의정 자료 수집을 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의정활동비가 지원되었고요. 최근 21년 만에 의정활동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만원까지 올리게 되었고요. 저는 의정활동비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정활동비 인

상이 왜 필요한 건지, 어느 정도 활동비가 적당한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21년에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국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단 13%만 만족한다고 답했고요. 불만족에 대한 응답자는 38.5%였습니다. 만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35.6%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꼽았습니다. 그리고 29.1%가 부패 및 도덕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설문 조사 결과 이걸 이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지방 의회에 의정활동비 인상 건으로 관련된 뉴스만 검색해서 보더라도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여론이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의정활동비 인상은 형평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다른 자치구에서도 해당 이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이 동일한 조건으로 의정활동비를 지원받아야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의정 활동비가 다르다면 의정 활동비의 지역별 차별을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방의원은 일반적 보수 체계와 다른 점이 많고 또한 겸직이 가능합니다. 정부의 역대적 세수 부족으로 국민의 체감 경기가 하락하는 이 시기에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작한 지역 정치인들의 의정활동비 인상 논의가 적절한지 의문이 듭니다. 앞서 찬성하는 의결에도 저도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36%의 의정활동비 인상이 20년간 누적된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국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과하다고 판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인상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평가한 후에 인상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은지 제안을 드립니다. 아까 찬성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라든가 활동에 대한 내용들이 건수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건수에서 보면 이거를 저희가 19명으로 나누다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는 좀 적절하게 올렸으면 합니다.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청객들 박수)

## □ 주재자

- 네, ○○○님 발표 감사합니다. 현재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악화 등을 이유로 점진적 인상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발표자 네 분의 좋은 발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상호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는 혹시 질의할 것이나 추가로 발언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고 답변)

- 네. 없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제 방청하고 계신 우리 주민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어느 동 누구인지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사람 없음)

- 너무 조용하신 것 같아요.
-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여기저기 예 하는 답변 있음)

**□ 방청인A**

- 잘 들었습니다.

**□ 주재자**

- 그러면 여러 가지 의견 감사드리고요. 오늘 공청회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새마포기획팀장**

- 네. 다시 한 번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하신 의견서 있으시면 나가시는 길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